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309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309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20219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289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 선고 2016. 4. 1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20219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조항에서 정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